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 (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)
--

1.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구체화(안 제3조의2 신설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9504호, '23. 6. 20., 일부 개정)에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세부 요건을 시행규칙에 위임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으로 후속투자의 기업가치와 지분 전환 조건 연동, 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 명시
- 조건부지분전환계약시 후속투자 여부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의무 규정
 - * (투자유치 성공) 전환사채 발행계약일 전까지의 원리금 상환의무 소멸
 - (투자유치 실패) 원리금 상환
-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, 계약 체결 이후 타 계약 당사자 고지 의무 부여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대한 이해도 제고, 주주 및 타 계약당사자 보호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2. 개인투자조합 투자비율 산정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포함(안 제7조제1호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투자의 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추가(벤처투자법 제2조제1호마목 신설)에 따라 벤처투자법령의 투자비율 산정 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반영 근거 마련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체결을 창업기획자·개인투자조합·벤처투자회사·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인정 범위에 추가
 - * 창업기획자·벤처투자회사·벤처투자조합은 본 조문의 인용을 통해 투자실적 인정 범위에 반영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벤처투자 범위의 일관성 확보,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이용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3. 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’ 명칭을 ‘벤처투자회사’로 변경(안 제18조 등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9504호, '23. 6. 20., 일부 개정)에 따라 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’ 명칭을 ‘벤처투자회사’로 변경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

나. 제·개정 내용

- 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’ 명칭을 ‘벤처투자회사’로 변경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벤처투자 촉진의 입법 취지 반영, 법률 용어의 통일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4. 유한(책임)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유한(책임)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라 용어 정비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(벤처투자회사의 등록)

나. 제·개정 내용

등록신청 제출서류	주주의 명부	➡	주주 또는 출자자의 명부
변경등록이 필요한 중요사항	발행주식 총수 주식 소유 현황	➡	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 주식 또는 출자자의 출자지분 소유 현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법인 형태에 따른 법률 용어의 정확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별도 없음

5.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 간소화(현행 제24조제1항 삭제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행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조합 등록에 앞서 결성계획 제출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하나, 결성계획 제출 자료와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의 중복으로 투자자의 부담 가중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(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벤처투자조합 등록 전 단계의 결성계획 제출·승인 절차 폐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투자자의 행정 부담 완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6. 투자목적회사 관련 등록·변경등록 의무 부여(안 제24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투자목적회사의 설립·차입, 투자 의무, 주주·사원 등 법령에서 명시한 요건 확인을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등록·변경등록 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 서류 제출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(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투자목적회사 설립·차입·청산 및 주주·사원 변동 시 벤처투자조합 등록·변경등록 의무 부여
- 벤처투자조합 등록·변경등록 시 첨부서류(별지 제11호서식) 및 등록원부 기재사항(별지 제12호서식)에 투자목적회사 관련 사항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투자목적회사 설립·차입, 재산 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